

정 관

- 1998. 1. 3. 승 인
- 2000. 6. 7. 개 정
- 2001. 3. 13. 개 정
- 2003. 2. 26. 개 정
- 2005. 4. 27. 개 정
- 2006. 3. 7. 개 정
- 2007. 3. 13. 개 정
- 2009. 4. 3. 개 정
- 2010. 2. 25. 개 정
- 2016. 2. 26. 개 정
- 2018. 2. 28. 개 정
- 2019. 2. 28. 개 정
- 2023. 2. 23. 개 정

특수
법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목 차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명칭)
- 제3조(주사무소 및 지점 등의 설치)
- 제4조(정관의 변경)
- 제5조(대리인 선임 등기 등)
- 제6조(의사록)
- 제7조(공고)
- 제8조(주소 및 인감의 신고)

제2장 사 업

- 제9조(사업)
- 제10조(공제규정 등)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3장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관리 등

- 제12조(기본재산의 조성)
- 제13조(기본재산의 운영 등)

제4장 손실보전준비금

-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제5장 조합원

- 제16조(공제조합원 자격)
- 제17조(공제조합 가입)
- 제18조(조합원의 권리·의무)
- 제19조(조합원의 책임)
- 제20조(조합원의 탈퇴)
- 제21조(조합원의 제명 및 권리 정지)

제6장 출자와 출자증권 등

- 제22조(자본금과 출자)
- 제23조(출자증권)
- 제24조(증자 및 감자)
- 제25조(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보호)
- 제26조(출자증권의 양도 및 명의개서)
- 제27조(출자증권 양도의 제한 등)
- 제28조(조합의 지분취득 등)
- 제29조(출자증권의 재교부)
- 제30조(출자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7장 총 회

- 제31조(총 회)
- 제32조(총회의 소집)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 제34조(총회의 의결권)
- 제35조(총회의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제8장 (삭제)

- 제36조 (삭제)

- 제37조 (삭제)
- 제38조 (삭제)
- 제39조 (삭제)
- 제40조 (삭제)
- 제41조 (삭제)
- 제42조 (삭제)

제9장 이 사 회

- 제43조(이사회)
- 제44조(이사회 의 소집)
- 제44조2(이사회 의 의결사항 및 의결 정족수)

제10장 임원 · 직원 · 고문 등

- 제45조(임원 의 정수 및 선출)
- 제45조2(임원 의 임기)
- 제46조(임원 의 직무)
- 제47조(이사장 의 재의요구권)
- 제48조(임원 등 의 책임)
- 제49조(대리인 의 선임)
- 제50조(감사 의 직무)
- 제51조(임원 의 대표권 제한)
- 제52조(임원 의 해임 등)
- 제53조(임원 및 직원 의 보수)
- 제54조(조직 및 직원 의 임면)
- 제55조(고문 등 의 위촉)

제11장 자산 및 회계

- 제56조(사업년도)
- 제57조(예산총계주 의 원칙)

- 제58조(예산편성)
- 제59조(회계)
- 제60조(특별계정)
- 제61조(추가경정예산 등)
- 제62조(결산)
- 제63조(지분의 계산)
- 제64조(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
- 제65조(공제조합의 준비금)
- 제65조의2(준비금의 출자전입)
- 제66조 (삭제)
- 제67조(손실의 보전)
- 제68조(공제조합 승인 및 보고사항)

제12장 해산과 청산

- 제69조(해산사유)
- 제70조(청산인)
- 제71조(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

부 칙

- 제1조(시행일)
- 제2조(회계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 제3조(공제조합설립 및 업무개시일까지의 경과조치)
- 제4조(창립당시의 임원에 관한 경과규정)
- 제5조(승계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6조(제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7조(창립당시의 임원)

부 칙

- 제1조(시행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부 칙

제1조(시행일)

부 칙

제1조(시행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정 관

- 1998. 1. 3. 승 인
- 2000. 6. 7. 개 정
- 2001. 3. 13. 개 정
- 2003. 2. 26. 개 정
- 2005. 4. 27. 개 정
- 2006. 3. 7. 개 정
- 2007. 3. 13. 개 정
- 2009. 4. 3. 개 정
- 2010. 2. 25. 개 정
- 2016. 2. 26. 개 정
- 2018. 2. 28. 개 정
- 2019. 2. 28. 개 정
- 2023. 2. 23.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제조합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여,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을 행하고, 제9조제2항의 부가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소프트웨어산업활동의 원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4. 3 개정)

제2조(명칭) 이 공제조합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영문 Korea Software Financial Cooperative】(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2006. 3. 7 개정)

제3조(주사무소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공제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의 변경) ① 공제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된 정관변경은 발의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총회 출석좌수의 3분의2 이상에 해당되는 조합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9. 4. 3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 2. 28 개정)

제5조(대리인 선임 등기 등)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 이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점등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을 둔 사무소 또는 지점 등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한 내용
- ② 공제조합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등기를 할 수 있다.

제6조(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 의사경과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총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2인 이상, 이사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 ① 공제조합의 광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2009. 4. 3 개정)

1. 합병·분할·감자·해산 :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게재
 2. 결산 등 : 홈페이지 게시 후 조합원에게 전자전송 또는 서면 안내
- ② 제1항의 광고내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주소 및 인감의 신고) ① 조합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주소와 인감을 공제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주소와 인감의 신고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써 받는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장 사 업

제9조(사업) ① 공제조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공제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또는 보험 (2005. 4. 27 개정)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 ② 공제조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부가목적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준조합원 및 조합원·준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보험 또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2019. 2. 28 개정)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교육시설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 및 운영관리 (2007. 3. 13 개정)
 6. 수출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에 부대되는 다음의 사업
 - 가. 공제조합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매매·임대 등 운영관리 (2007. 3. 13 신설)
 - 나. 기타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07. 3. 13 신설)
- ③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의 대여
 2.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사업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0조(공제규정 등) ① 공제조합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대상, 공제종류 및 그 내용과 범위, 공제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손실보전준비금,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제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취급요령 및 기준 등에서 이를 정하여 운영한다.

④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사업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유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3 장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관리 등

제12조(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조합원의 출자금·출연금
3. 조합원의 공제부금·예탁금
4.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예탁금
5.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6. 공제조합 운영상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제13조(기본재산의 운영 등) ① 공제조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자금대여 사업
2. 채무보증 사업
3. 이행보증 사업
4. 자금투자 사업
5. 부가목적 사업
6. 공제조합운영상 필요한 지출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자금대여 및 투자 준비금과 채무보증 및 이행보증 사업의 지급준비금으로 우선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제조합의 수지를 위하여 가능한한 최대수익원칙으로 운용한다.

1. 은행, 우체국,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 매입 (2007. 3. 13 개정)
2.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 또는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등의 매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4. 간접투자자산운영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매입 (2007. 3. 13 개정)
5.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방법

제 4 장 손실보전준비금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공제조합을 건전·원활하게 운영하고 기본재산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 계정을 두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은 정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제14조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조합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만 이를 사용한다. 다만 적립된 자금은 이를 별도 예치·운용할 수 있다.

제 5 장 조 합 원

제16조(공제조합원 자격) ①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2019. 2. 28 개정)

③ 공제조합은 제9조제2항의 부가목적사업만을 이용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가입시

킬 수 있다. (2019. 2. 28 신설)

제17조(공제조합 가입) ① 공제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출자 1좌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2.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출자증권,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탁서
4. 인감증명서
5. 기타 공제조합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출자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세부취급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2019. 2. 28 신설)

제18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고, 공제조합의 각종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준조합원은 제9조제2항의 부가목적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진다. (2019. 2. 28 단서 신설)

② 조합원은 정관·규정 등과 기타 각종 약정을 준수하고, 보고 및 신고의 의무를 진다.

제19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은 그 지분액을 한도로하여 공제조합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0조(조합원의 탈퇴) ① 조합원은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공제조합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폐지 또는 법인을 해산하였을 경우
2.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3. 출자증권을 전부 양도 하였을 경우
4. 제명되었을 경우

제21조(조합원의 제명 및 권리 정지)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총 출자좌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찬성으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총회 개최 10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제규정으로 정한 공제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위신을 현저하게 손상하였을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정하는 출자좌수에 미달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조합에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되거나 공제조합의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 또는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업무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 6 장 출자와 출자증권 등

제22조(자본금과 출자)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50만원으로 하고,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의 한도는 이사회 의결로서 정한다. (2016. 2. 26 개정)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23조(출자증권) ① 공제조합은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부한 때에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에 출자목적으로 출자금 또는 출자예탁금을 납입한 자는 납입일에 당해 납입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016. 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이사장” 표기 다음에 법인 인감으로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의 설립연월일
3. 총 출자금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주소
6. 출자연월일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③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1좌권, 5좌권, 10좌권, 50좌권, 100좌권, 500좌권 및 1,000좌권의 7종으로 한다. (2016. 2. 26 개정)

④ 조합원이 출자증권을 분할 또는 병합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병합신청서에 그 출자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증자 및 감자)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증자 또는 감자할 수 있다.

1. 증자하고자 할 때에는 증자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준비금을 출자전입하는 경우와 감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6. 2. 26 개정) (2018. 2. 28 개정)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또는 감자하는 때에는 그 좌수, 금액, 지분액의 불입 또는 환급기간 및 방법을 2주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금을 출자전입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16. 2. 26 단서조문 신설)

③ 공제조합은 증자를 하는 경우 새로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출자좌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신 출자증권의 인수 청약자가 불입금액을 불입기일까지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불입 완료일까지 불입할 금액에 대하여 공제조합의 자금대여금리에 의한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25조(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보호) ① 공제조합이 감자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의 감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되 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공제조합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감자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6조(출자증권의 양도 및 명의개서)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증권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명의개서를 받은 때에 승계한다.

③ 공제조합이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2009. 4. 3 개정)

제27조(출자증권 양도의 제한 등) ① 조합원이 자금대여, 채무보증 및 이행보증 등을 받았을 때에는 공제규정 및 관련 취급요령 등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출자증권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8조(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경우에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16. 2. 26 개정)

제29조(출자증권의 재교부) 출자증권의 종류변경이나 분실·오손등으로 인하여 새로 출자증권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따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출자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공제조합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2주일전에 출자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의결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2주일전에 공고한 후 출자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조합의 매 사업연도 이익금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 현재로 출자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2016. 2. 26 신설)

제 7 장 총 회

제31조(총회) ① 공제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가 의결하고 요구하는 경우

3. 총출자좌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총회의 목적과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4. 감사가 회의목적과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④ 이사장이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결권) ①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미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취득한 지분
 2. 제20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한 자가 보유한 지분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가 보유한 지분 또는 의결권이 정지된 지분

제35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좌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8 장 (삭제)

제36~42조 (삭제)

제 9 장 이 사 회

제43조(이사회) ① 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2007. 3. 13 개정) (2018. 2. 28 개정) (2023. 2. 23 개정)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삭 제> (2009. 4. 3 개정)
- ⑤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⑥ 이사회는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010. 2. 25 개정)

제4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
- ② 이사회 소집시에는 개최 3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사전 송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44조2(이사회 의결사항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제사업의 운영·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제, 인사, 보수, 직제, 회계규정 및 취업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중 출자금의 증액 및 감소에 관한 사항
5. 공제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한 사항
7. 총회 부의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기타 공제조합의 운영·관리의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 의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중 공제규정에 규정한 사항 등을 공제업무심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장 임원·직원·고문 등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공제조합의 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이사장, 부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2007. 3. 13 개정) (2018. 2. 28 개정)

1. 총회가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소속된 자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인 이하 (2007. 3. 13 개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1인 (2018. 2. 28 개정)
3. 총회가 선출하는 유관기관의 임원 1인
4. 총회가 선출하는 외부 금융기관전문가 1인 및 내부 공제전문가 이사 1인 (2023. 2. 23 개정)
5. 총회가 조합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는 부이사장 1인 (2018. 2. 28 개정)
6. 총회가 선출하는 감사 2인 (2009. 4. 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중 부이사장과 내부 공제전문가 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1인을 상근으로 할 수 있다. (2007. 3. 13 개정) (2018. 2. 28 개정) (2023. 2. 23 개정)

③ 공제조합의 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되 부이사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0. 2. 25 개정) (2018. 2. 28 개정)

④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임기내 사임 등으로 궐위가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이 경우에도 부이사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010. 2. 25 개정)
(2018. 2. 28 개정)

⑤ 공제조합의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2(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으로 재임중 총회에서 이사장 등 다른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임기는 그때부터 3년으로 한다. (2010. 2. 25 개정)

②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임기내 사임 등으로 궐위가 되어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18. 2. 28 개정)

③ 임원은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으며, 임원의 신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이 이사장에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임기 3년을 보장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있다. (2016. 2. 26 개정)

④ 임원이 임기종료후 3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⑤ 임원의 임기의 종기는 임기 중 최종의 정기총회시 까지로 한다.

⑥ <삭 제> (2023. 2. 23 개정)

제4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조합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공제조합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공제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2018. 2. 28 개정)

③ 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9. 4. 3 개정)

제47조(이사장의 재의요구권)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차기 총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차기 총회에서 원 의결대로 다시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의결은 효력을 잃는다.

1.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경우

2. 법령 또는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을 요할 경우

3. 특정한 조합원에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공제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8조(임원 등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정관과 공제규정 등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③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총회에서 다시 의결되어 집행된 경우에 그 집행에 관하여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9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공제조합의 재산·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부정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총회·이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9. 4. 3 개정) (2018. 2. 28 개정)

제51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해와 공제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가 공제조합을 대표한다. (2009. 4. 3 개정)

- 제52조(임원의 해임 등)**
- ① 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임원의 해임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발의가 있는 때에는 총회는 총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해임원의 해임을 이사장에게 요구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당해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53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공제조합은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위로금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

- 제54조(조직 및 직원의 임면)**
- ① 공제조합의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직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공제조합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촉탁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임면 등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고문 등의 위촉) 공제조합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상당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장 자산 및 회계

제56조(사업년도) 공제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7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58조(예산편성) ①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8. 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승인된 예산은 차기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을 승인받지 못한 때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9조(회계)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자금, 출연금 및 손실보전준비금은 이를 자본계정으로 계리하되, 출자금 및 출연금은 자본금계정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은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계리한다.

② 공제조합의 회계는 법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과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은 공제조합 회계기준에 의하고 공제조합 회계기준 이외의 것은 일반회계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0조(특별계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가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회계는 이를 부가목적사업계정으로 따로 구분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2009. 4. 3 개정)

제61조(추가경정예산 등) ① 공제조합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018. 2. 28 개정)

③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예비비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이를 사용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각 관·항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목간의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변경(목내의 세부항목의 신설 및 목내의 세부항목의 변경을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2조(결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경과후 2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기간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 사무소·지점 및 출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지분의 계산) 공제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좌수)/(출자좌수와 출연금의 환산 출자좌수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2016. 2. 26 개정)

제64조(공제조합의 이익금처리) 공제조합은 매 사업년도의 이익금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2016. 2. 26 신설)
6. 이월금

제65조(공제조합의 준비금) ① 공제조합은 매사업년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잔여잉여금의 범위내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이익준비금은 제6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손실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준비금은 제64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손실금, 손실보전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잔여잉여금의 범위내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할 수 있다.

④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가액이상으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그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과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3.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4. 기타 자본 잉여금

⑤ 이익금의 배당은 이익금 중에서 손실금 및 각종 준비금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출자금 + 출연금)에 비례하여 배당을 하되 그 배당률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16. 2. 26 신설)

제65조의2(준비금의 출자전입)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2016. 2. 26 신설)

② 조합은 준비금의 출자전입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는 신규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중전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가지는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 2. 26 신설)

제66조(삭제)

제67조(손실의 보전) 공제조합의 공제사업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공제조합 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68조(공제조합 승인 및 보고사항)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8. 2. 28 개정)

1. 정관의 변경
2. 공제조합의 병합 및 해산
3. 상근 임직원의 정수
4. 사업계획 및 예산
5. 공제규정의 변경
6. (2005. 4. 27 삭제)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8. 2. 28 개정)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파악을 위한 사항
4.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

제 12 장 해산과 청산

제69조(해산사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된다.

1.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2.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3. 공제조합의 총 출좌좌수의 5분의4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해산결의와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

제70조(청산인)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청산인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1조(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 공제조합이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공제조합 설립년도의 회계연도는 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3조(공제조합설립 및 업무개시일까지의 경과조치)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그 업무를 승계할 때까지는 법개정전에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제사업기관으로 지정공고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조(창립당시의 임원에 관한 경과규정) ① 창립당시의 임원은 발기인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 설립인가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창립당시의 이사장은 전무이사를 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게 한다.

제5조(승계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수행하던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신분은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공제조합이 업무개시일에 자동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재산 중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납부된 가입금 및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출연금은 공제조합의 출연금으로 하여 이를 공제조합의 자본계정으로 승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예치금 등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명의로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재산과 권리·의무 중 공제가입자에게 자금대여, 채무보증 또는 이행보증한 명의로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공제조합 업무개시후 3월 이내에 법 및 영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행·교부하고 출연금은 출연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제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수행하던 공제사업과 관련된 공제규정 및 세부취급요령 등과 기타 제규정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공제조합에 적용한다. 다만, 제규정 중 공제조합의 명칭등 일부용어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이를 자동수정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수행하던 공제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협약 또는 계약 등은 공제조합과 협약 또는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창립당시의 임원) 창립당시의 임원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 7.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개정전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 정관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의 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임원의 임기는 기존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이 정관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자금운용은 별도의 자금운용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 의결 및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변경에 따라 공제조합의 모든 규정, 요령 규칙의 “전무이사”는 “사무총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일(2009. 4. 3)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일(2010. 2. 25)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관 제45조2(임원의 임기)는 2010. 2. 25일 현재 재임하고 있거나, 이후 선임되는 모든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일(2016. 2. 2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일(2018. 2. 28)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변경에 따라 공제조합의 모든 규정, 요령 규칙의 “사무총장”은 “부이사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일(2019. 2. 2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일(2023. 3. 2)로부터 시행한다.